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0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30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의 개정으로 일부 실·국이 신설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‘감사관’을 삭제하고, 신설되는 ‘감사위원회’를 그 소관으로 함(안제33조제1항제2호).
- 나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중 ‘문화체육관광본부’를 ‘문화본부’로 변경하고, 신설되는 ‘관광체육국’을 그 소관으로 함(안 제33조제1항제5호).
- 다.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‘복지건강본부’를 ‘복지본부’로 변경하고, 신설되는 ‘시민건강국’을 그 소관으로 함(안 제 33조제1항제6호).

라.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중 ‘도시안전본부’를 ‘안전총괄
본부’로 변경하고, 신설되는 ‘물순환안전국’을 그 소관으로
함(안 제33조제1항제7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
등에 관한 규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3조제1항제5호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나목부터 차목을 각각 다목부터 카목으로 하며,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문화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관광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3조제1항제6호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나목부터 마목을 각각 다목부터 바목으로 하며,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복지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3조제1항제7호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나목부터 마목을

각각 다목부터 바목으로 하며,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안전총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별 소관) ① (생략)	제33조(상임위원회별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라. (생략) 마. <u>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바.~차. (생략)	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라. (현행과 같음) 마. <u>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바.~차. (현행과 같음)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. <u>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<신 설></u> 나. <u>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다. <u>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라. <u>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</u> 마. <u>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</u> 바. <u>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</u> 사. <u>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</u> 아. <u>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</u> 자. <u>교통방송에 관한 사항</u> 차. <u>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</u>	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. <u>문화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나. <u>관광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다. <u>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라. <u>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마. <u>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</u> 바. <u>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</u> 사. <u>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</u> 아. <u>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</u> 자. <u>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</u> 차. <u>교통방송에 관한 사항</u> 카. <u>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</u>
6. 보건복지위원회 가. <u>복지건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<신 설></u> 나. <u>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	6. 보건복지위원회 가. <u>복지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나. <u>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다. <u>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

현 행	개 정 안
<p><u>다.</u>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<u>라.</u>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<u>마.</u>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</p> <p>7.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. <u>도시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<신 설></u> <u>나.</u>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<u>다.</u>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u>라.</u>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8.~10. (생략)</p>	<p><u>라.</u>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<u>마.</u>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<u>바.</u>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</p> <p>7.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. <u>안전총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나.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다.</u>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<u>라.</u>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u>마.</u>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8.~10. (현행과 같음)</p>